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이경선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시는 조명기구 신·증설과 개량 시

좋은빛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

과도한 심의건수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,

심의건수 47%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 조명 중

단순 공정인 “개량사업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

좋은빛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

「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
빗공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,

상위법에 따라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

1년 이내에 관할지역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

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
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서 공간조명 개량사업을

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